

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

2003. 10. 10. 제정

2020. 4. 13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과정연구원(Post-Doctoral Researcher)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박사후과정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기간) ①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계속해서 재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임용할 수 있다.

② 박사후과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가 그 임용기간 만료전에 종료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그 연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.

제4조(권리와 의무) ①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한다.

② 박사후과정연구원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본교의 교육방침을 받들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수당) ①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연구수당은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또는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비에서 지급한다.

②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연구수당 지급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20.4.13.)

제6조(임용 등) ① 박사후과정연구원은 그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이 속하는 연구조직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총장은 박사후과정연구원이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제7조(증명서의 발부) 박사후과정연구원에 대하여는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.

제8조(복무) 박사후과정연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4.13.]

제9조(위임규정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0.4.13.)

부칙(2003. 10. 10 제정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② 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박사연구원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내규에 의해 박사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20. 4. 13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